



#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

## 1. 관련

- 가. 2023년 제2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14.)
- 나.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3439호, 2023.12.26.)
-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4.1.1.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코로나19 검사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질병관리청)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3. (방대본)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1부. 끝.

##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특별시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전결 2023. 12. 27. 정성훈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6331 (2023. 12. 27.)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7 팩스번호 044-202-3934 / [shsong98@korea.kr](mailto:shsong98@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